

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3. 23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2010. 3. 23 | |
| 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10. 3. 31 |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|

2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의 법령 변경,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 →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(안 제2조)
- 기금출납원 개정 : 농업정책업무담당주사 → 농업정책과 주무담당
(안 제11조 제1항 제2호)
- 용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생략 근거 마련(안 제12조 제3항)
 - 당해연도 용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
군수가 결정하여 선정
- 용자대상사업 관련조항 변경 : 제4조제1항 → 제5조제1항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 - 862호(2009. 11. 24 ~ 2009. 12. 14)
 - 의견제출사항
- 관계법령 및 근거
 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 -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“농업·농촌기본법”이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 2009년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,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상 금년도 초부터 조례 적용이 예상되는데도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제 때 조례 개정을 못한 사유는?
- 답 : 취합부서에 개별 건을 의회 넘기는 경우가 드물고 실과 취합하다 보니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
- 문 : 앞으로 제 때 하도록 하십시오.
- 답 : 예, 알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